

V.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4사례)

** 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 심의결과 총괄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3사례(승인 2사례, 불승인 1사례)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1사례(불승인 1사례)

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 여부(총 3사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에 따라
1. 가.~파.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1 (남/55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짐 정리 도중 움직임 및 호흡 없어 119 통해 내원한 자로, 당시 심실세동 관찰되어 제세동 후 회복하였고 심장초음파 검사상 승모판 역류(mitral regurgitation) 발견되어 승모판 성형술(mitral valve repair) 시행함. 심장 MRI에서 꼭지근(papillary muscle)에 지연조영증강의 소견이 보여 재발 가능성 존재하며, 충분한 심기능 검사에도 가역적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 사례2 (남/36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고 당시 초기 리듬 무수축(asystole)이었으나 심폐소생술(CPR) 시행하여 심실세동 관찰되어 제세동 후 회복함. 초기 발견된 무수축(asystole) 전에 심실세동 가능성 있으며, 관상동맥조영술(CAG) 상 폐쇄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Ergonovine 검사에서 혈관경련도 유발되지 않아 비가역적인 원인의 심정지로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함.

○ 사례3 (남/59세)

- 신청항목: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경정맥)
- 심의결과: 불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 확인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급여기준」 1. 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대상 신청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Ergonovine 유발검사 상 양성이며 관상동맥조영술(CAG) 검사 상 변이형 협심증으로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판단되어, 그에 따른 충분한 약물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하지 아니함(불승인)

2.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 여부(총 1사례)

-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2호, 2024.1.1. 시행)에 따라
 1. 가.~다.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1 (남/55세)
 - 신청항목: 심장재동기화치료(CRT-D)
 - 심의결과: 불승인
 - 심의내용: 이 사례는 2015년 지속성단형심실빈맥으로 당시에도 심부전 증상 악화 및 좌각차단(LBBB) 동반되어 있었으나 삽입형 제세동기(ICD)만 시행 받은 자로, 향후 CRT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 1. 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 신청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구혈률(EF)≥35%로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근 근거자료 부족으로 심장재동기화치료(CRT)의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하지 아니함(불승인)

[2024. 11. 19. ~ 11. 2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재동기화치료 분과위원회(서면)]
[2024. 12. 10. 중앙심사조정위원회]